

# 2022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계획 공고

## 1. 포상 개요

### □ 목적

- 국내 바이오산업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바이오분야 우수 기업의 공로를 치하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욕을 배양하고 경영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바이오분야 산업계의 사기진작을 도모

□ 시상 : 2022년 12월 중, 서울 소재 행사장 (2022 바이오 기업인의 날 연계 예정)

### □ 기본방향

-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를 통한 국가경제산업발전 및 글로벌시장 진출, 일자리창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발굴·추천
- 기술집약적이고 창업이 활발한 바이오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후보기업을 고르게 발굴

### □ 포상 부문 및 포상요건

부문	신청대상	포상요건
스타트업	벤처기업인증 득한 바이오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	- 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에 탁월한 성과(R&D 활성화, 특히 확대 등)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 -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탁월한 성과(매출증대, 투자유치, 수출활성화 등)를 달성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기업
중소·중견 ·대기업	바이오분야 중소·중견·대기업	- 기업의 경영활동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타 경제 산업 발전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용확대에 공헌한 기업

### □ 포상 내용

-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 4점

포상명	부문	시상규모(예정)	
바이오 혁신성장기업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스타트업	1점
		중소·중견·대기업	1점
	한국바이오협회장상	스타트업	1점
		중소·중견·대기업	1점

## 2. 신청 자격

### □ 기본요건

- 바이오분야 기업

### □ 제한사항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.
  - 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포상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(단체 포함)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 등

- 최근 3년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- ‘임원’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(사업상 등기부 등본, 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’을 통해 확인)
-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
-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(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)
-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-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(포상추천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료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)

○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
※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○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○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(단체포함)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「상훈법」, 「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 참고

## □ 기타 유의사항

○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○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

### 3.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

#### □ 선정절차

○ 신청접수 → 서류심사\* → 심사위원회(포상 대상자 후보결정) →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(포상 대상자 최종심의) → 시상식 개최(포상)

\* 사전검토 :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, 휴·폐업, 회계현황, 국가 R&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

\*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

#### □ 심사기준

심사항목	세부 기준
기술혁신	R&D 환경 및 활동, 성과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우수성
경영성과	성장성 및 수익성, 안정성, 고용 등 기업의 경영 성과
글로벌 진출	기술협력 및 기술수출, 해외 인·허가, 수출액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
기타	국내외 수상 실적 및 투자유치 현황, 사회공헌 등 기타 경제·사회적 기여도

### 4. 관련 서류제출

#### □ 신청서 제출

- 관련양식 : 2022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신청서식
- 접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
- 접수방법 : E-mail (koreabio4@gmail.com) 접수
- 접수기한 : 2022년 10월 7일(금) 오후 3시까지 (E-mail 수신기준)
- 문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 담당자  
Tel. 031-628-0036 E-mail. shkim@koreabio.org

## □ 제출서류 안내

### 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1	포상 신청서	서식 제1호	
2	공적조서	서식 제2호	
3	대표자 이력서	서식 제3호	대표자 사진 jpg 포함
4	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	서식 제4호	
5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-	
6	고용·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		최근 3개년 연말 기준
7	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감사보고서	-	최근 3개년
8	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됨.
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2] 2022년 바이오 혁신성장기업 유공 포상 신청서식의 제출 서류 checklist 참조

### ○ 제출 유의사항

- 포상 신청서 등 작성서류는 ①한글파일 (hwp) 및 ②스캔파일 (PDF) 2종류 모두 제출
- 문서파일명은 '2022바이오혁신성장기업(신청부문)-기관명'으로 저장하여 제출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

## □ 유의사항

-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